

국내 최초 콘텐츠도용 소송 해당사 모두 100만원 약식기소

취재 백승오

인터넷 관련 지재권 제정 시급, 과제 남겨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국내 최초의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해당사들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인 후이즈 측은 이에 불복, 항소의 뜻을 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분쟁당사자는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와 '인터넷 프라

자'.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후이즈'가 인터넷 프라자 등 4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한 혐의로 5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인터넷 저작권법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된 분쟁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의 향배는 향후 추진될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이즈가 인터넷저작권 소송을 낸 업체는 인터넷프라자를 비롯한 싸다콤, 디플러스아이, 헬쓰 인포 등 4개사였으나 인터넷프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컨텐츠의 도용사실을 인정하고 후이즈는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은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 양사 간의 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분쟁에 대한 후이즈 측의 설명은 이렇다. 인터넷 프라자 측에서 후이즈의 콘텐츠를 일부 도용해서 5개월 간에 걸쳐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증거확보 차원에서 후이즈 측은 인터넷프라자의 홈페이지를 내려받아 보관

소송일지

1999. 12. 13	후이즈, 인터넷프라자 등 4개사 54억8천만원 손해소송제기
1999. 12. 18	후이즈, 인터넷프라자 등 4개사에 형사소송 제기
1999. 12. 20~23	후이즈, 주주에 인터넷저작권 소송경위 공고(한겨레신문 등 5개 일간지)
2000. 01	인터넷프라자, 후이즈를 정보질취 및 명예훼손으로 5억 손배소송
2000. 01. 17	인터넷프라자, 후이즈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형사소송 제기
2000. 01. 20~25	인터넷프라자, 후이즈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무단절취했다고 신문에 광고 게재(매일경제 등 3개 일간지)
2000. 02. 03	후이즈, 인터넷프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2000. 02. 22~23	디플러스아이, 컨텐츠도용사실 인정, 사과문게재(전자신문, 매일경제)
2000. 02월	후이즈, 디플러스아이에 대한 소취하
2000. 04월	싸다콤, 컨텐츠도용사실인정 및 후이즈측에 사과
2000. 04월	후이즈, 싸다콤에 대한 소취하
2000. 06. 01	서울지검,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후이즈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현재, 후이즈의 인터넷프라자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진행 중)

하고 있었으며,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인터넷 프라자측의 설명은 후이즈의 이러한 행위를 자사 홈페이지 도용이라는 이유로 맞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사건은 양측이 콘텐츠 도용이라는 분쟁에서 시작해 명예훼손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러하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후이즈 측은 주주들에게 인터넷저작권 소송경위를 신문에 공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후이즈 측의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프라자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인터넷프라자측도 후이즈측이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했다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후이즈측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프라자를 맞고소해 현재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소내용: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각각 100만원에 약식기소함. 후이즈의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기소사실(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프라자시티는 1999년 6월에서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 후이즈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무단복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가 있다. 후이즈는 1999년 12월 16일 인터넷프라자시티 홈페이지 내용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회사컴퓨터에 저장한 혐의가 있다.

후이즈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를 다운받은 것은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기 때문에 증거보존차원에서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프라자의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다운받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또 다른 도용이다. 증거 확보 차원이라면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해야하는 것이 아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의 상징적 의미

앞서 양사의 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픈된 인터넷상에서는 콘텐츠 무단복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결국 콘텐츠를 폐쇄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의 근본을 뽑아버리는 일이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은 감수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악의적인 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단할 길이 없다. 물론 이에 앞서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절도나 강도가 해당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긴 하나 법제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거론된 분쟁의 예는 도메일 등록을 주 상품으로 하는 업체들이다. 즉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콘텐츠를 운영하는 수많은 업체들은 향후 양사의 분쟁 과정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동일 종목을 상품으로 하는 인터넷기업들은 서로 비슷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소송은 계속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콘텐츠를 주상품으로 하는 IP사업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다. 누가 먼저 개발했는가의 시기상의 문제나 얼마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동일한 아이디어로 동일 콘텐츠를 가질 가능성 등, 인터넷관련 콘텐츠는 재적재산권의 소유권 구분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법재정시 특히 이번 판례는 인터넷기업의 제3자 분쟁 판결에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다반사로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분쟁의 경우 기술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치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니냐”라고 말해 분쟁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양사의 분쟁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인터넷관련 지적재산권 입법에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